

# 아산시의회 공고 제2019-6호

## 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아산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아 산 시 의 회 의 장



### 1. 조례안 목록

조례안	발의의원	비고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상 의원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상 의원 심상복 의원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정근 의원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맹의석 의원	
아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재영 의원	
아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최재영 의원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맹의석 의원	
아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이상덕 의원	

※ 조례안 : 따로붙임 참조

## 2. 의견제출

○ 이 조례 제·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의 의견서를 아산시의회의회장 (참조: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기한 : 2019년 5월 8일(수)까지

나. 의견 제출방법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 3) 서면, 우편, 전자우편(pys9799@korea.kr), 팩스(041-540-2135)로 제출
- 4) 의견 제출할 곳 : (우)31512/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아산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의회 의회사무국(☎ 041-540-2905, 2628, 2705, 27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붙임]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